

2024 구미시 위탁 사업 예산 금액

공공위탁	민간위탁 (위탁금+사업비)
64,530,625,000원	100,919,445,000원
1,654 억원	

구미시 전체 예산 2조의 5% 이상 차지

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6장 관리 운영

제17조(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)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위탁기관에 있으며,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.

② 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위탁기관의 명의로 한다.

제18조(운영지원) 시장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.

제19조(사용료 징수 등) ①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용료·수수료·비용 등(이하 "사용료 등"이라 한다)을 위탁기관이 징수하거나 감면하게 할 수 있다.

② 위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징수하거나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20조(사무편람) ① 위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·처리기간·처리과정·처리기준·구비서류·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② 위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위탁기간 개시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,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기관이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 내용이 부당하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21조(지도·감독)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위탁기관을 지도·감독하며,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위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위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제22조(처리상황의 감사)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내용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, 감사를 할 때에는 필요한 서류,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23조(성과평가)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

1.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평가를 받은 경우
2. 위탁기간 1년 미만의 일회성 사무로 정산 시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
3.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성과평가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에 공정성과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 실시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22조(처리상황의 감사)

민간위탁사무의 처리내용에 대하여
연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
감사를 할 때에는
필요한 서류, 시설 등을
검사할 수 있다.

